

<定款>

미래에셋맵스리얼티부동산공모투자회사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KRM225643662

제1장 총칙

제1조(상호 및 종류) ①이 회사는 미래에셋맵스리얼티부동산공모투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MIRAEASSET MAPS REALTY INVESTMENT COMPANY 라 표기한다.

②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서 동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주주는 국내외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부동산 등은 시중 실세금리 및 다양한 경제변수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③회사는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 투자회사
2. 부동산집합투자기구
3. 환매금지형
4. 단위형

제2조(목적 등) 회사는 법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등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회사는 주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부동산시장 등에의 투자를 통한 수익창출을 추구할 것이며, 따라서 회사의 운용성과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부동산경기를 포함한 다양한 경제변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영업소 등의 설치) 회사는 본점을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에 두며, 본점 이외의 별도의 영업소는 두지 아니한다.

제4조(직원의 고용 제한 등) 회사는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5조(광고방법)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re1.miraeasset.com/main/intro.do>)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 이상 신문의 광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경제신문에 추가로 게재한다.

제2장 주식

제6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억주로 한다.

제7조(무액면주의 발행)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은 무액면으로 한다.

제8조(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발행가액) 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0,000주로 하며, 총 발행가액은 1억원으로 한다.

제9조(최저순자산액) 회사가 유지하여야 하는 최저 순자산액은 일십억원으로 한다.

제10조(주식의 종류 및 권종) 회사가 발행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11조(주권의 발행 및 전자등록) ①회사는 회사의 성립일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라 한다)」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해당 주식을 전자등록한다.

②판매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전자증권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고객계좌부(이하 "투자회사 주식고객계좌부"라 한다)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고객의 성명 및 주소
2. 주식의 종류 및 수

③ <삭제>

④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12조(예탁주권의 교부) <삭제>

제13조(주권의 재교부) <삭제>

제14조(주식의 양도) ①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하여야 하며, 투자회사주식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주식에 대하여 적법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자증권법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5조(주식의 통장거래) 주주는 회사와 판매회사 간에 체결한 "투자회사주식통장거래계약서" (주식판매 계약서에 그 내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통장(카드 등을 포함한다)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제16조(자기주식의 취득 제한 등) ①회사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경우
2. 주주의 환매청구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3. 회사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거나 합병을 의결하는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기

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체 없이 처분하여야 한다.

1. 전자증권법에 따른 말소의 전자등록
2. 판매회사를 통한 매각
3. 제3자에의 직접 매각

제17조(주권의 상장) 회사는 주식을 최초로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한다.

제18조(신주의 발행 등) ①이 투자회사는 법 제230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로서 설립 후 최초로 모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 회사는 기존 주주를 대상으로 신주를 우선 배정하되 신주인수권증서는 부여하지 아니하며, 실권주에 한하여 기존 주주 외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1. 기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신탁업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2. 이 투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익분배금의 범위 안에서 이 투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는 경우
3.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보유비율에 따라 추가로 발행되는 집합투자증권의 우선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4. 위 제3호에 따라 기존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의 우선 매수기회를 부여하였으나 매수되지 아니한 집합투자증권이 있어서 기존 투자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수기회를 부여하는 경우

②회사가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이사회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신주의 배정기준일, 주주명부폐쇄기간, 모집기간 및 납입기일
2. 발행하는 신주수의 상한
3. 발행가액을 정하는 방법

③신주는 이사회가 정하여 공고하는 배정기준일 현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 소유비율에 안분하여 배정한다.

④신주인수의 청약에 의한 신주인수인은 납입일에 신주의 인수가액을 현금 또는 수표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신주의 발행가격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회사가 금융위원회에 투자회사로 등록한 날 이후의 최초의 신주청약이고 제6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가격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주청약일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신주가 납입되는 날에 고시되는 기준가격
2. 회사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된 경우 당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격

⑥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영업일"이라 함은 판매회사 또는 신주청약취급회사의 영업일(다만, 토요일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⑦신주인수의 청약은 회사의 판매회사 또는 신주청약취급회사에서 하여야 한다.

⑧주식의 청약 단위는 일주 단위로 한다.

제 19 조(판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주식의 판매 및 청약취급 행위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취득하지 않는다.

제20조(신주의 효력발생시기) 회사가 성립 후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인수인은 주금의 납입과 동시에 주주의 권리의무를 가진다.

제21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환매의 청구) ①주주는 이 투자회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주식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1. 주주가 사망한 때

2. 주주인 법인이 법정관리, 화의신청 또는 해산하는 때

②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주주가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법령에서 정하는 사유(이하 “해산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회사와 자산운용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미래에셋자산운용(주)를 말한다.)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35조제2항에 따라 신탁업자신탁업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회사재산의 보관 및 관리를 업무로 하는 자로서 제57조 규정에 의하여 회사와 자산보관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주)국민은행을 말한다.)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청구를 받거나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 받은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는 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환매에 응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23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①주식의 환매가격은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10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②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환매하는 회사는 주주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부터 **제10영업일**에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주주에게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③판매회사(제22조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환매대금에서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주주에게 지급한다.

④환매대금은 회사재산으로 보유중인 현금 또는 회사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이 회사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회사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제 1 항 및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사의 주주가 17 시[오후 5 시]경과 후에 환매 청구한 경우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11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청구일로부터 제 11 영업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제24조(환매수수료) 판매회사는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

제25조(주식의 일부환매) ①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에 주주는 보유한 주식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주주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청구 등의 사유로 보유 주식의 수가 10주 미만인 경우, 주주는 그 10주 미만의 잔여 주식에 대하여도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26조(주식의 환매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8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제9영업일 전일)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2. 해산한 경우
3. 순자산액이 제9조의 최저순자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4.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제27조(주식의 환매연기) 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를 요구받은 회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주식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자체 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주주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 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주주의 이익 또는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증권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회사 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나. 회사 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주주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주주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환매를 연기한 경우 회사는 환매를 연기한 날부터 6주 이내에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하여야 한다.

1. 환매를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환매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2. 환매연기를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환매연기기간과 환매를 재개할 때의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3. 법 제237조제5항에 따라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의 처리방법

- ③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회사 주식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다.
- ④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주식의 환매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환매에 관하여 정한 사항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
- ⑤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이 의결되거나 환매를 계속 연기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주주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에서 환매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경우
 - 가. 환매에 관하여 의결한 사항
 - 나. 환매가격, 일부환매의 경우에는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등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환매연기를 계속하는 경우
 - 가. 환매를 연기하는 사유
 - 나. 환매를 연기하는 기간
 - 다.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환매대금의 지급방법
 - 라.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에 환매가격 및 환매대금의 지급시기, 일부환매의 경우에 그 뜻과 일부환매의 규모 등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⑥환매연기사유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소되어 환매를 재개할 수 있을 경우 회사는 환매가 연기된 주주 및 판매회사에 대하여 환매한다는 뜻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대금을 지급한다.
1. 환매연기 주주총회일 이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2. 환매연기 주주총회의 개최 전에 환매를 재개하는 경우 :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매금 지급. 이 경우 회사는 환매연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제1항,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
 2.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로 하여금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주주에게 알리는 방법
 3. 집합투자업자, 주식을 판매한 판매회사의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

제28조(주식의 일부환매) ①회사는 회사 재산의 일부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환매연기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이하 "정상자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회사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를 위한 주주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는 이 회사 주식의 보유주식수에 따라 별도의 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회사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회사에 대하여는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 주식을 발행 및 판매할 수 있다.

⑤회사가 일부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판매회사, 신탁업자 및 투자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일부환매 결정일 및 사유
2. 환매연기자산에 관한 사항 및 동 자산이 집합투자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3. 환매연기자산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별도의 집합투자기구 설정 또는 설립 여부, 집합투자자총회에 관한 사항 등)
 4. 투자자는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며, 환매청구에 대하여는 정상자산에 대한 투자자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다는 내용
 5. 그 밖에 투자자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
- ⑥ 회사는 제5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하여야 한다.
- ⑦ 회사는 제5항 각 호의 내용 및 일부환매 결정 후 취한 조치내역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주식의 소각) <삭제>

제30조(명의개서대리인 등) ①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업무를 회사와 일반사무관리계약을 체결한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임한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명의개서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명의개서대리인은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회사 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삭제>

④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⑤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 내지 제5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같다.

제31조(주주명부 및 실질주주명부)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이익금 등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회사는 전항의 기간 또는 일정한 날을 정한 경우 지체없이 전자등록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전자등록기관은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경우 판매회사에 대하여 주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1. 주주의 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

2. 주주가 보유한 주권의 종류 및 수

④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통보를 받은 전자등록기관은 주주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회사는 그 통보받은 사항과 통보년월일을 기재한 주주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삭제>

⑥회사가 제 1 항의 날을 정한 경우에는 상법 제 354 조제 4 항의 전단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의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부환매 결정에 의한 정상자산과 환매연기자산으로 분리를 위한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2. 주주총회 합병승인에 따른 회사의 합병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3. 해산에 따른 청산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4. 투자회사 사업년도 종료에 따른 이익분배금 지급을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5.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개별 고지가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기준일을 설정하는 경우

제3장 주주총회

제32조(주주총회의 소집) ①주주총회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소집을 요청하여 법인이사(이하 이사)가 소집하며 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기타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②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요청하는 경우에 이사회는 1월 이내에 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후 1월 이내에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주주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3조(주주총회의 운영)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인이사(이하 이사)로 한다. 다만, 법인이사(이하 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 중 이사회에서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주주총회는 발행된 주식총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의결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4조(의장의 질서 유지권) ①주주총회의 의장은 그 주주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및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35조(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 ①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 총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이 항에서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본다.

1. 주주에게 법 시행령 제221조제6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총수가 발행된 주식총수의 10분의1이상일 것

4. 그 밖에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221조제7항에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②회사는 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또는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서면에 의한 의결권행사에 필요

한 서면 및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회일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주주는 회사의 영업시간중에 언제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및 참고자료의 열람과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의결권등) ①의결권은 주식 1주마다 1개로 한다.

②주주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주주총회의 연기) ①회사는 제33조 제2항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가 연기된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 주주총회(이하 “연기 주주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기주주총회일 1주 전까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하여 연기주주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연기주주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 주식 총수의 8분의1 이상의 수로 결의한다. 다만,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정관으로 정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다.

제38조(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게 주식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법 제19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정관의 변경 또는 법 제204조제2항에 따른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반대(주주총회 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주주가 그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 제204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이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가 법 시행령 제222조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회사는 당해 주주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에 따른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 매수청구가 있는 경우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제22 조의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다. 다만, 매수자금의 부족으로 매수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의 매수를 연기할 수 있다.

제39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와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40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2주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그 밖에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이사의 구분 및 수) ①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법인이사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

②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42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①회사는 법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감독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②감독이사로 선임된 자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에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감독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43조(이사의 선임 및 임기) ①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감독이사의 임기는 제69조에서 정한 해산일까지로 한다. 다만, 법 제199조제4항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사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인이사의 임기는 집합투자업자가 제57조제2항에 따라 투자회사와 체결한 자산운용위탁계약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제44조(이사의 보선) 법 제197조제2항에서 규정한 감독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및 법인이사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결원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를 즉시 소집하여야 한다.

1. 법 제4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2. 해산한 경우
3.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다른 금융기관으로 전환하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4. 법 제4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폐지한 경우(투자회사재산의 운용업무를 폐지한 경우)
5.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법인이사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45조(법인이사의 직무) ①법인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다.

②법인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그 업무의 집행상황 및 자산의 운용내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법인이사는 법인이사의 직무의 범위를 정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자를 그 임직원 중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이사는 이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에 통보된 자가 직무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는 법인이사의 행위로 본다.

제46조(감독이사의 직무) ①감독이사는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하여 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7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이사회는 법인이사와 감독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②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하며, 회일 1일전까지 각 이사에 대하여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이사회의 직무) ①이사회는 법과 이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결한다.

②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주총회의 소집
2. 신주발행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과의 업무위탁계약 및 그 변경계약의 체결
4. 자산의 운용 또는 보관 등에 따르는 보수의 지급
5. 금전의 분배 및 주식의 배당에 관한 사항
6. 금전의 차입에 관한 사항
7. 기타 법 등 관련 법령 및 이 정관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도록 정한 사항

제49조(이사회의 의결방법) ①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다.

제51조(감독이사의 보수) ①감독이사의 보수에 관한 기준은 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다만, 설립 후 최초의 이사에 대한 보수는 발기인 총회에서 정한다.

②감독이사의 보수는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감독이사의 퇴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장 업무

제52조(투자대상 등)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투자대상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1. 법 제22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대출, 그 밖에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및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

1의2. 법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이하 "금전 대여"라 한다) 이 경우 금전대여는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시공사 등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등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1의3.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부동산에의 투자를 목적으로 한 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라목 및 사목의 부동산개발회사 및 부동산투자목적회사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이하 "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이라 한다)

2. 법 시행령 제240조제2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된 것을 포함한다)(이하 “부동산사용권등”이라 한다)

3.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

4.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증권”이라 한다)

5.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하며,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이하 “어음등”이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에 한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6.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및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화관련 장외파생상품(다만, 위험회피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 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7. 금리스왑거래

8.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등”이라 한다)

9. 투자회사재산으로 보유하는 증권의 대여

10.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11.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제53조(투자한도)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사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까지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50% 초과하여야 한다.

1. 부동산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60%이상으로 한다.

1의2. 금전대여 및 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이하로 한다.

2. 부동산사용권등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100%이하로 한다.

3. 채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4. 어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5.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30%이하로 한다.
6. 집합투자증권등에의 투자는 회사 자산총액의 40% 이하로 한다.
7. 금리스왑거래는 거래시점에서 교환하는 약정이자의 산출근거가 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의 총액이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 이하가 되도록 한다.
8. 증권의 대여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9. 환매조건부매도는 투자회사가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 이하로 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호 내지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회사 성립 후 최초운용개시일로부터 6월간
2. 사업년도 종료일 이전 1월간 또는 해산일 이전 1년간
3. 제1항제1호에 투자·운용함에 있어 투자대상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경우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신주발행 또는 주식의 일부소각이 각각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회사자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6.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

제54조(금전의 차입) ①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호의 내용과 달리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1. 차입금의 규모가 집합투자재산의 순자산 총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차입금 규모의 계산은 이 투자회사 정관 제52조제1호 내지 제2호의 투자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입한 자금 전체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차입할 것
 - 가.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
 - 나. 보험회사
 - 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 라. 다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등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금전을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에 운용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55조(자산운용의 제한) ①회사의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행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債權)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회사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 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에 회사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간 적용한다.

라.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0까지 부동산개발회사 또는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3. 회사의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만, 동일한 부동산개발회사 또는 동일한 부동산투자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회사자산을 집합투자증권에 운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는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다.

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 법 시행령 제80조제10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회사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 같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이 투자회사 주식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외국 판매회사(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를 포함한다)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 시행령 제 80 조 제 11 항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회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7.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회사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8. 법 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9.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10. 회사 자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11. 회사 재산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12.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그 대여금의 한도가 투자회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②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증권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일부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53조제 1 항제 7 호 내지 제 9 호 및 이 조 제 1 항 1 호 내지 제 7 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투자회사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매각이 불가능한 증권은 매각이 가능한 시기까지 이를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회사 성립 후의 최초 운용개시일로부터 1 월간은 이 조 제 1 항제 2 호본문 및 제 6 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6조(자산운용지시등) ①법인이사는 회사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회사의 명의로 법인이사가 회사를 대표한다는 사실을 표시하여 자산의 취득·처분등을 하고, 신탁업자에게 취득·처분등을 한 자산의 보관·관리에 필요한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가 법령, 규정 및 이 정관에서 정하는 자산운용대상 및 방법, 투자한도, 자산운용제한, 자산운용지시등 자산운용상 금지행위 및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에 관한 사항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감독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투자회사의 감독이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에 집합투자업자에 대해

여 당해 운용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시를 하는 경우 전자등록기관의 전산시스템을 통하는 등 그 지시내용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관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57조(업무의 위탁) ①회사는 보유자산의 운용, 보관, 발행주식의 모집 및 판매 또는 일반사무관리에 관한 업무를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할 자산운용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는 회사의 자산을 위탁 받아 운용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탁업자와 체결한 자산보관위탁계약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산운용에 따라 회사가 보유하게 되는 자산의 보관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와 체결할 판매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사 발행주식의 모집 또는 판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다만, 보수의 상한은 회사 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 이내로 한다.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체결할 일반사무관리위탁계약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회사 운영에 관한 사무 및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는 내용
2. 지급할 보수 및 계약기간에 관한 내용
3. 업무 수행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책임에 관한 내용

제58조(자산운용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법 시행령 제9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관리·개발·개발 및 임대업의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를 제3자를 통하여 영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업무위탁에 따른 책임은 집합투자업자에게 귀속된다.

제59조(해외보관대리인)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해외보관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해외보관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2조에 해당하는 투자회사재산 중 해외에 예탁한 자산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업무
2. 제1호의 투자회사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추심업무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된다고 신탁업자가 판단하는 업무

제60조(차입 및 보증의 제한) ①회사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제외하고는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주식의 환매청구 또는 주식의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 또는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에는 차입 당시의 회사 재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입금 전액에 대한 변제가 완료 되기 전까지 자산을 추가로 매입(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의 전매 및 환매를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은행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5.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6. 증권금융회사
7. 종합금융회사
8.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9. 보험회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준하는 외국 금융기관

제6장 계산

제61조(사업년도) 회사의 최초 사업년도는 회사 설립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후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2025년 12월 31일 이후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 개시하여 6월 30일에 종료하고, 7월 1일에 개시하여 다음 12월 31일 종료한다.

제62조(결산서류 작성 및 회계감사) ①회사는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명세서 (이하 “결산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②법인이사는 제1항의 결산서류의 승인을 위하여 이사회 개최 1주전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법인이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서류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무상태표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날부터 2 월 이내에 회사자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사업년도 종료일
2. 투자회사의 해산일

제63조(자산의 평가) ①집합투자업자는 법 제238조제1항에 따라 회사자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회사자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238조제 2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집합투자업자는 회사자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법 제238조 제3항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이하 이조에서 “집합투자재산평가

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집합투자업자는 제2항에 따른 평가위원회가 회사재산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명세를 지체 없이 신탁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회사재산의 평가가 법령 및 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4조(기준가격의 계산 및 공시) ①회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공고일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순자산가치"이라 한다)을 공고·게시일 전일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되, 1주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산정한다.

③회사가 성립 후에 최초로 신주를 발행하는 때의 기준가격은 5,000원이고, 이 경우 1주의 가격은 5,000원으로 한다.

④회사는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하여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등에 공고·게시한다. 다만, 회사가 외화자산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사 재산을 평가한 후 정상적으로 공고·게시할 수 있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판매회사 영업일에 공고·게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15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회사가 공고한 기준가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준법감시인과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된 기준가격을 재공고 하여야 한다.

제65조(집합투자업자보수 등) ①회사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대한 보수(이하 "투자회사보수"라 한다)는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하는 자산운용매매보수와 자산운용관리보수, 판매회사가 취득하는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가 취득하는 신탁업자보수 및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취득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로 구분한다.

②**자산운용매매보수**는 이 투자회사재산으로 부동산, 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 또는 부동산사용권등을 매입하는 경우 **매매가액**(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 지분매입가액과 당해 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의 부동산담보차입금 및 임대보증금등을 합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을 회사재산에서 인출하여 부동산, 부동산투자목적회사주식등 또는 부동산사용권등의 매매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집합투자업자가 취득한다. 다만,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취득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매매보수의 60%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선취하고 40%는권리취득이 완료된 날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취득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자산운용매매보수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계산기간(이하 "보수계산기간"이라 한다)은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매 3월간으로 하며 보수 계산기간 중 투자회사보수를 매 일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계상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회사 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1. 보수계산기간의 종료
2. 회사의 해산
3. 위탁계약의 해지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회사보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수율에 보수계산기간 중 회사 재산의 평균잔액(매일의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에 부동산등의 취득시 매매가액에 합산된 차입금 및 임대보증금등을 합한 금액을 보수계산기간의 초일부터 보수계상 당일까지 누적 하여 합한 후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로 나

는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판매회사보수 산정시 적용하는 평균잔액은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 재산 순자산가치를 기초로 산출한다. <개정 2021.05.28>

1. 자산운용관리보수율 : 연 1,000분의 8.5

2. 판매회사보수율 : 회사의 설립일로부터 5년간 연 1,000분의 5.0, 그 이후에는 연 1,000분의 0.0

3. 신탁업자보수율 : 연 1,000분의 0.5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1,000분의 0.5

제66조(자산의 운용비용 등) ①회사 자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의 부담으로 하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이를 인출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비용"이라 함은 자산의 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52조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증권 등의 매매수수료
2. 차입금의 이자 및 부대비용
3. 회사에 관한 소송비용
4. 회사 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비용
5. 제52조 각호에 해당하는 증권 예탁 및 결제비용
6.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
7. 제52조 각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증권 등의 가격정보 비용
8. 주주총회 개최와 관련되는 비용
9. 법, 이 정관 및 투자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 대한 통지 등과 관련 되어 발생하는 비용
10.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상장수수료 및 연부과금 등 제비용
11. 회사 재산의 운용에 필요한 지적재산권비용
12. 부동산등에 대한 감정평가, 법률자문, 회계자문, 부동산 매매자문, 사업성평가 등에 소요되는 비용
13.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관리·개량·개발 또는 임대 업무와 그에 부수하는 업무의 위탁에 따른 비용 <신설 08.06.04>
1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 회사의 운영 및 회사 자산의 운용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 <호변 변경 08.06.04>

③제2항제6호의 해외보관대리인에 대한 보관수수료는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보관수수료의 지급기일과 지급방법은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해외보관대리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67조(이익분배 등) ①회사는 이익금의 범위내에서 주주에게 현금 또는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할 수 있다.

②결산 분배금 지급의 경우에는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그 소유 또는 질권 등록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③회사가 이익금 전액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 발행시기 등 주식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④회사가 이익금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분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동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일 현재 주주의 권리가 있는 자에게 이사회에서 정한 일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동 지급일은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배금은 순자산총액에서 최저순자산액을 공제

한 금액 범위내로 한다.

제68조(분배금 등의 소멸시효) ①회사의 결산분배금 또는 청산분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결산분배금 및 청산분배금은 회사에 귀속한다.

제7장 해산

제69조(해산) ①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1. 정관에서 정한 존속기간의 만료 그 밖의 해산사유의 발생
2. 주주총회의 해산 결의
3. 투자회사의 피흡수합병
4. 투자회사의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6. 투자회사 등록이 취소
7. 주주(법인이사인 주주는 제외한다)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인정되거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청산인이 법인이사인 경우에는 상호·사업자등록번호)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청산인회 보수) 청산인 또는 청산감독인은 법 제202조제5항에 따른 경우에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20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71조(정관의 변경) ① 본 정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법 제201조제2항본문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의 변경
3. 정관으로 투자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4. 그 밖에 주주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229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② 회사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29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

③정관의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의결로 변경하여야 하는 것 외의 사항은 이사의회의 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④이 정관에 규정된 사항 중 법령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⑤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정관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및 주주에의 통지

2.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

제71조의 2(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 ①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투자회사재산에 손실을 초래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집합투자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③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합병·분할·분할합병

2. 영업양도 등으로 신탁계약의 전부가 이전되는 경우

3. 법 제184조제4항, 법 제24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투자회사의 일부가 이전되는 경우

4.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6. 법 시행령 제245조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합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외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어 이 투자회사의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이 투자회사재산 한도 내에서 그로 인한 손실의 보상 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조(자산운용보고서 등의 교부) ①집합투자업자는 회사 설립일부터 매 3월마다 또는 존립기간의 만료일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주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팩스,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②신탁업자는 사업년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73조(주주에 대한 공시)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지체없이 한국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통하여 주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 시행령 제93조제2항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률
4. 주주총회의 결의내용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시행령 제93조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제74조(법규 적용 등) ①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주총회의 의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법 및 기타 법률의 관계규정에 의한다.

②본 정관에 규정된 사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변경으로 그 적용이 의무화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른다.

제75조(존립기간)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일로부터 40년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을 각각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일로부터 해산일까지
2. 회사설립일로부터 40년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보유중인 자산 중 제5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투자재산이 시장상황등으로 매각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설립일로부터 당해 투자재산의 전부 매각에 따른 정산일 이후 회사가 정하는 날까지

제76조(합병) ①회사는 법 제201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의결로 법인회사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②합병가액은 합병하는 날의 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합병계획서의 주요내용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주주총회 회일의 2주전부터 합병을 한 날 이후 6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 및 판매회사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합병하는 각 투자회사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회사의 주주에게 발행하는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⑤회사는 다른 투자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사의 주권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한국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⑥회사는 합병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주주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⑦회사가 채권자가 있는 투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고난도금융투자상품) 이 투자회사는 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고난도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78조(발기인의 성명, 주소) 회사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는 다음과 같다.

회 사 명 미래에셋자산운용(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33, Tower 1 13층(청진동, 그랑서울)

대표이사 최 창 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증권신고서(일괄신고서)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기존 정관을 대체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